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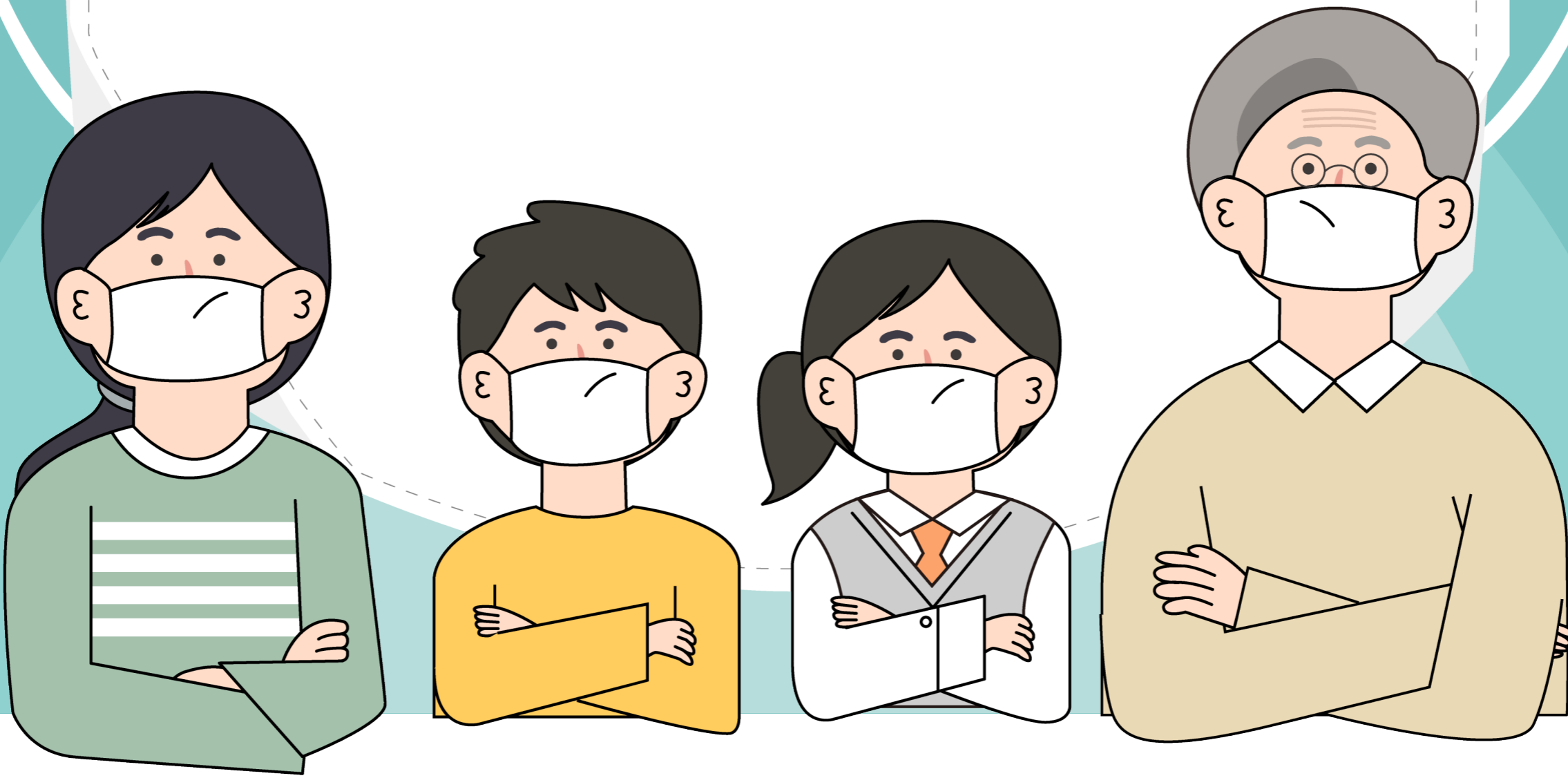
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

#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'마스크 착용' 의무화 [행정조치 발령]

인천시는 인천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 
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

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(계도기간 : 10월 12일(월)까지, 시행: 10월 13일(화))



## 1. 적용기간

8월 21일(금) ~ 별도 해제 시까지

## 2. 적용대상

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## 3. 적용장소

실내·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### 실내

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### 실외

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